

의안
번호

51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51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7.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자체가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 등의 구체적 명시
(안 제6조)
- 나. 지자체가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
방지를 위한 명시(안 제6조2)
- 다.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운영 대한 지도·감독
및 감사 근거 명시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
- 나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2. 10. 06. ~ 2022. 10. 26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6조(재정지원)제3항 신설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조항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상근직원 인력운영비, 관서운영 기본경비, 사무시설 임차료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음.

<개정 전·후 비교표>

국민체육진흥법 [법률 제17580호, 2020. 12. 8, 일부개정]	국민체육진흥법 [법률 제18808호, 2022. 2. 3, 일부개정]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	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
③ 지방자치단체는 <u>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12.8> [전문개정 2016.2.3]	③ 지방자치단체는 <u>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12.8, 2022.2.3> [전문개정 2016.2.3]

- 안 제6조의2(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)와 안 제12조(지도·감독)의 신설은 안 제4조에서 체육회 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임.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권고한 체육회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